



# 대한치과병원협회

수신자: 각 수련치과병원장 및 수련기관장

참조:

제목: 각 수련치과병원(기관) 전공의 수련기간 준수 관련 업무 협조 요청

---

1. 근거 : 가. 의료법 제27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제2호

나.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

다. 치과의사전공의 및 수련치과병원 관리지침 V.전공의관리

2. 위 관련 근거와 같이,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연도는 3월1일(공중보건의 또는 군 의무장교 출신 전공의는 5월 1일)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

3. 상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합격된 전공의를 미리 소집하여 수련시키는 경우가 빈번하여 타 수련치과병원(기관)에게는 피해를 주며 전공의에게는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인턴 합격자의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초래하기도 합니다.

4. 2016년도에는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에서 본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조기 소집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끝.

대한치과병원협회 회장 류인철



담당 조은혜  
협조자

사무국장 손승범

시행 치병협 2016 - D4 (2016.3.7)

접수 ( )

우 03080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B165 / <http://www.kdha.net>

전화 (02)756-4039 / 팩스 (02)756-5039 / [kdha@kdha.net](mailto:kdha@kdha.net) / 비공개